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「충북도립대학」 교명 변경 동의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「충북도립대학」 교명 변경 동의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18년 08월 28일
- 회부일자: 2018년 08월 31일

3. 제안이유

- 고등교육법 개정(2011.7월)에 따라 전문대학도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 사용 가능하게 되었음
- 전남도립대학을 시작으로 최근 강원도립대학까지 4개 도립대학이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로 교명변경을 추진하였음
- 공립대학의 교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정하게 되어 있으며, 교육부의 최종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음
- 이에, 우리대학은 교명 변경에 대한 교육부 인가 신청 전에 충청북도의회와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현재 교명인 충북도립대학을 충북도립대학교로 변경하여 학교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
- 교육부의 교명변경 인가 후 변경된 교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관련 조례 및 학칙 개정 추진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법적 근거 및 동의안의 내용

- 학교명칭 변경은 「고등교육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변경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후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함
- 「고등교육법」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공립대학도 ‘대학 또는 대학교’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,
- 충북도립대학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「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시 의회 부결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고려할 때 학교 명칭 변경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는 적절하다고 사료됨

### ○ 종합의견

- ‘충북도립대학’ 명칭은 2008년 11월 1일 충북과학대학에서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음
- 「고등교육법」 제18조 제1항 변경(2011. 7. 21.)에 따라 대학 또는 대학교 명칭사용
- 전국7개 도립대학 중 2015 충남도립대학교가, 2016년에는 강원도립대학교가 대학에서 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등 4개 학교가 교명을 변경 하였으며 다른 도립대학에서도 교명 변경이 예상되고 있음
- 이에 충북도립대학에서는 그동안 직원, 학과, 총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, 대학평의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찬성의결을 받아 교명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
-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하여 교명에 따른 학교 간 차별성을 극복하고 대학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교명변경은 적절하다고 사료됨
- 다만, 교명변경이 재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장기적인 학교발전에 기여할 것으로는 예상되지만, 교명변경 자체만으로는 학교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학교 운영의 내실화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전공과목 개설 및 우수한 교수진의 확보 등 대학발전 전략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수립 시행하여 할 것으로 사료됨

## 참고 1 전국도립대학교 현황

### □ 전국도립대학 기본현황 (2018년 기준)

구분	학 교 명	설립연도	학과수	편제정원	교수인원	비고
1	강 원 도 립 대 학 교	1998	11	975	30	
2	경 남 도 립 거 창 대 학	1996	12	960	29	
3	경 남 도 립 남 해 대 학	1996	8	800	23	
4	경 북 도 립 대 학 교	1997	13	910	30	
5	전 남 도 립 대 학 교	1998	18	1,530	45	
6	충 남 도 립 대 학 교	1997	12	1,104	32	
7	충 북 도 립 대 학	1997	11	1,000	30	

### □ 전국 도립대학 교명변경 추진 현황

변 경 전	변 경 후	변 경 일
강원도립대학	강원도립대학교	2016. 4. 1.
충남도립청양대학	충남도립대학교	2015. 1. 1.
경북도립대학	경북도립대학교	2013. 1. 1.
전남도립대학	전남도립대학교	2012. 1. 1.
남해전문대학	경남도립남해대학	2008. 7. 1.
거창전문대학	경남도립거창대학	2008. 7. 1.

**□ 고등교육법**

**제4조(학교의 설립 등)**

-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·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-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18조(학교의 명칭)**

- ① 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,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을 정할 때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.

**□ 고등교육법 시행령**

**제2조(학교설립 등)**

- ① 「고등교육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·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②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1. 목적 **2. 명칭** 3. 위치 4. 학칙 5. 학교헌장 6.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. 실험실 습설비 등 내부시설 8. 교사의 평면도 9. 개교예정일 10.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.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
- ⑤ **법 제4조 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"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·경영자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.**
- ⑥ **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**
  - 1. 변경사유 2. 변경내용 3. 변경연월일
- ⑦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1. 학교의 폐지: 60일
  - 2. 학교의 위치 변경: 60일
  - 3. 학교의 설립·경영자 변경: 30일
  - 4. 학교의 설립목적, 명칭 또는 부설학교의 설립계획서 변경: 30일